



Korean Tax Newsletter

2025 년 3 월

CONTENTS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 개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무동향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발표

예규판례

○ 법원

- 국세부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 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 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부과제척기간이 쟁점 이 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 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질적 제 작자로서 영상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 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기획재정부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 가금액 계산 방법

○ 국세청

- CFC 적용 여부에 따른 배당 재원의 익금산입 적용 범위(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제 4 항)
 - 통행료 인하 차액보전금이 법인법 §18(6)에 따라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3.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보도자료\(Link\)](#)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조특령 §9⑮)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
 <개정이유>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 마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규정(조특령 §21④)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규정(조특령 §21④)
 <개정안>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 (사업화시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개정이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조특령 §21⑤·⑩·⑪·⑯)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사용비율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
 - i)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이, 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ii)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이, 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이자상당액 납부
 - * (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공제세액 등 - 일반시설 공제세액
 - (자료제출)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령 §104의 30)
 <개정안>

-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출자전환 당시 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등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
 - (합병·분할 시 승계)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법인이 손금산입 특례 승계 가능
 - (사후관리) ①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익금산입, ② 취득한 주식등 처분 시 익금산입
 - (특례 신청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특례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사항 규정(상증령 §34 의 5)

- <개정안>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 유형,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 주주의 지분율) 규정
-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감자
 -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증자
 - (현물출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
 - (주식전환) 전환사채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개정이유> 특정법인과 거래 이익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구체화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규정(국기법 §67 의 4 및 별표 신설)

- <개정안>
- (부과기준) ① 의무 불이행기간 × ② 1 일당 부과금액
 - ① 대상기간: 세무조사 기간(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무조사 중단기간 포함) 중 의무 불이행기간
 - ② 1 일당 부과금액: [원칙] 직전 3 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 × (0.001 ~0.002)
 - [예외] 평균수입금액 불분명시 500 만원 이하
 - (부과절차) 금액, 사유, 납부기한 등을 서면통지
 - (부과방법) 이행기한 도과시 매 30 일 마다 부과
-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소득세법 시행령

○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른 조각투자상품 범위 추가(소득령 §26 의 3)

- <개정안>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단일한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50 인 이상)된 것일 것' 추가
-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과세범위 합리화

세무동향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은 입법예고(3.19. ~ 4.28.) 등을 거쳐 5 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3.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기본원칙

-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 →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
 - 과세대상(국내·해외 재산)을 유산취득세 전환에 맞게 조정
 - 세액공제, 부과방식 등 기본 체계는 현행 유지
-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 강화
 - 자녀 등: 현행 일괄공제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공제 현실화
 - 배우자: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
-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 현행 제도에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도록 설계
- 납세 편의 고려
 -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
 - 신고기한(6 개월) 이후 별도 상속재산 분할기한(9 개월) 설정
-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 방안 마련
 - 과세관할(납세지)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현행 유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3.7.(금)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여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에는 세제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외환 분야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정책협의·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3.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 촉진
 - 국내주식 투자 촉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 검토
-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재추진
 - 주주환원 촉진세제¹⁾,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²⁾ 등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1) ①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법인세 5% 세액공제
 - ② 배당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증가분 등) 저율 분리과세
 - 2) ① (ISA 납입한도) 年 2천만원(총 1억원) → 4천만원(총 2억원)
 - ② (ISA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비거주자(거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 서류 제출 모두 폐지
 - 투자자는 ① 국제예탁결제기구(예: 유로클리어) 또는 ② 국내 금융기관 (외은지점 포함)에 기본 정보 (성명, 주소, 국적, 식별번호)만 제출

예규판례

[법원] 국세부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 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2.13. 선고 2023 두 41659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 177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 조의 15 제 3 항 제 3 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세부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 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 과세관청)

■ 사안

원고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른 지역 소재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 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 177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 조의 15 제 1 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만 원 이상인 경우’(제 3 호) 등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들고 있음. 같은 조 제 2 항 본문 및 제 2 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3 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 3 호(이하 ‘제 3 호 규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음.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 3 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1 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 3 호 규정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 3 호 규정의 해

석과 적용, 조세법률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법원]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2.27. 선고 2024 두 57262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구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3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 사안

피고는 2018. 8. 1. 원고들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서 2012년 1기분,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 11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 조의 2 제 1 항은 제 3 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제 1 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 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 두 169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2 는 제 1 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3 제 2 항 제 2 호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 11873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 천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라 함)

이러한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2 에 따라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 년이라고 보아야 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법원]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부과 제척기간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 두 54935 판결, 상고기각)

■ 쟁점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사안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음. 원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세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 160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 조의 2 제 1 항은 제 3 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 1 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으로 규정하고, 제 47 조 제 2 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서 정한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본세에 대하여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 2024 지 0374, 2024.12.18., 취소)

■ 쟁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건설사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담보신탁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4.10. 서울특별시 중랑구 000(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5.29. 지상에 건축물 83,043.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지식산업센터”라 함)를 신축하고,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 58 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 1 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쟁점토지 취득세 및 쟁점건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쟁점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 449 개호 중 27 개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완납 후 해당 시설을 제 3 자에게 임대하는 등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2023.10.11. 청구법인에게 27 개호에 대한 쟁점토지 취득세 및 쟁점건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이 건 감면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 두 50031 판결, 심리불속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법 제 28 조의 5 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해당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서 및 확인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449 개호 중 다른 용도로 사용된 곳은 27 개호에 불과하고 수분양자의 잔금납부 등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이후 해당 시설이 제 3 자에게 임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 서 1962, 2025.2.6., 취소)

■ 쟁점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에 따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2019.5.13. 충청북도 진천군에 ‘OOO’(이하 “쟁점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창고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22.5.6. 쟁점시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의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투자가 완료된 2022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2023.6.30. 쟁점시설과 경상남도 양산시에 설치한 ‘OOO’의 각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변경하여 2019~2021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처분청은 2024.1.17. ‘OOO’의 투자금 및 쟁점시설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투자금은 조특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쟁점시설(건물 및 구축물 부분)은 ‘보관과 저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른 ‘창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화물의 ‘보관·저장’이 주된 기능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인 ‘창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보관·저장’의 의미는 물품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지 물품이 보관되는 기간의 상대적인 장단에 따라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쟁점시설의 경우 비록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물품이 일정 시간 동안 쟁점시설 내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에 ‘보관’ 기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그 개정 당시에는 제 8 호에 규정되어 있었다)는 2004.3.6. 개정되면서 그 특례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단순한 보관·저장 기능만이 있는 창고만을 공제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관하여 한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인 쟁점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점(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874, 2024.10.8.)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은 쟁점규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질적 제작자로서 영상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 서 10590, 2025.3.11., 취소)

■ 쟁점

청구법인이 방송사와 방영권 계약을 하고, 외주제작사에 일부 제작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쟁점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6 년 5 월 설립되어 방송영상물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10.6. 영상콘텐츠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비용(이하 “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의 6(이하 “쟁점규정”)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처분청은 2023.8.9. 쟁점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방송사 간 방영권 구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사에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고, 영상콘텐츠의 저작권(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2 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일체를 보유하게 되므로,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프로그램 기획 시 사전에 이를 승인할 권한을 보유하면서 기획안, 대본 및 제작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지시하며, 주요 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하고, PPL 등 협찬과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는 등 외주제작사를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 9 조의 2에서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라 함은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작가 등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계약 체결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청구법인이 작가 등과의 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교섭을 통하여 합의하는 등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작비용이 귀속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 세부 항목(극본, 출연, 제작연출, 진행, 촬영, 조명 등) 별로 지출 주체 및 시기 등을 특정하여 예산을 수립한 다음, 외주제작사에 외주제작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등 실제 제작비용의 지출내역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외주제작사의 역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제작비를 수취하여 제작비용을 집행하는 데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 의 9] 소정의 비용을 외주제작사를 거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외주제작사가 제작과정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외주제작사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 2 조 제 14 호에 따른 영상제작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 2 조 제 14 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를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2 조의 6 제 1 항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게 될텐데,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따르는 경우, 쟁점이 되는 15 편의 드라마에는 결과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외주제작사 모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정액의 외주제작비를 수취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납품하는 외주제작사보다 영상콘텐츠 제작 전반을 책임지면서, 제작 및 방영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실질적인 제작자를 지원하는 것이 쟁점규정의 합리적 해석 및 제작 리스크 경감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이라는 세액공제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영상콘텐츠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규정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획재정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1.24.)

■ 질의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 천만원(‘21.2 월 조특령 개정전 7 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1 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 (2 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

제 2 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CFC 적용 여부에 따른 배당 재원의 익금산입 적용 범위(법인세법 제 18조의4 제 4 항)

(서면-2023-법규국조-2960, 2025.1.12.)

■ 질의

2024 년 2 월, 2022 년 이익잉여금과 2023 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 제 2 항에 따른 익금산입의 적용 범위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국 현지 실제 세 부담율이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특정외국법인은 국조법 제 27 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는 CFC 과세 적용대상이나, '22 년, 현지에서 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등,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CFC 과세 적용배제대상이었다가, '23 년, 다시 도매수입의 감소 등 CFC 적용배제 기준에 미달하여 CFC 과세 적용대상이 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퍼센트 이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 27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로서, 위 배당금이 국조법 제 27 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 년)의 이익잉여금과 국조법 제 27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은 앞선 사업연도('22 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 경우, 내국법인이 받은 위 수입 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 제 2 항에 따른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 27 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 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국세청] 통행료 인하 차액보전금이 법인법 §18(6)에 따라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990, 2025.2.6.)

■ 질의

통행료 인하 차액보전금을 ‘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 §18(6)적용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A-BB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30 년 동안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와 질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립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 「최종 변경실시협약」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통행료 인하로 인한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질의법인에게 보전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최종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및 질의법인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차액보전금 지급(이하 ‘쟁점 차액보전금’）」과 관련하여 차액보전 협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최종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하하는 한편, 차액보전 협약에 따라 쟁점 차액보전금은 국토교통부 대신 한국도로공사가 선투입하며, 한국도로공사는 그 대가로 질의법인의 민자사업 종료 이후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음으로써,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임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 2025.1.24.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 안) 익금불산입 불가능(∵ 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 안) 익금불산입 가능(∵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 안이 타당합니다. 끝.

[국세청]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3.20.)

■ 질의

질의법인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할인마트, 슈퍼마켓, 인터넷쇼핑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업무제휴관계가 있는 납품업체(이하 “협력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에 의한 판촉약정을 체결하고 비상시적으로 쿠폰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특정 할인품목을 구매하면서 사전공지에 따라 행사기간동안 쿠폰,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질의법인과 협력업체가 사전에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정상판매가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는 제도
- 소비자가 질의법인의 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구매하면서 쿠폰할인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결제시 통상의 판매가액에서 쿠폰할인액이 공제된 잔여금만을 지급하게 됨
- 질의법인과 협력업체는 사전협의하여 할인품목 등을 결정하고 협력업체는 질의법인이 주최하는 할인행사 결과 자기의 상품판매가 촉진된 것을 이유로 해당 행사기간 중 판매된 금액에 비례한 금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질의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초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에서 쟁점지원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함

회신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6 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